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8월 6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07/29  
이창우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1220호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제1조(목적) 중 “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주차, 교통 및 체육시설물,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” 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” 로 한다.

제18조제6호 중 “구립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” 을 “문화·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” 으로 한다.

제18조제7호 중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” 을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와 관련된 부대사업” 으로 한다.

제1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또는 구청장이 승인한 대행사업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

### □ 개정이유

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수탁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조례의 목적 부분을 폭넓게 규정 (제1조)

나.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영역을 확장  
(제18조제6항 및 제8항)